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제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갱신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별표 6의29에 따른”을 “제8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전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한다.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1) 및 2) 중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로 하고, 같은 란 제1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의14서식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제6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6
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로 한다.

제8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
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2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
록증명”으로,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협회 담당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를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하여”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를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하여”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생활물류서비

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제1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가목6)을 삭제한다.

제12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개정)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제8조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3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6조제2항 본문 중 “등기부등본을”을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4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의 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를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15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7조(「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2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8조(「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려는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 중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명칭, 협약 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 체결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9조(「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60일
------	-----

제20조(「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삭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보안검색위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정평가법인 [[] 정관변경
[] 합 병] 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감정평가 법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가받으려는 내용				
사 유				

사원 또는 이사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구 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등록 등) ① (생략)	제13조(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2. ----- --
가. <u>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u>	가. <u>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u>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 <u>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u>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① (생략)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5조의2에서 “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u> ”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u>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u> 을 말한다.	② ----- ----- ----- <u>제8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u>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 검단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 부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 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 검단 구성·운영) ① ----- ----- 법 제17조제5항-----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8조의2(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영 제11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u> 제36조(보고) ① (생략) <u>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u>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u> 2. <u>법 제122조·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u> 3. <u>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u>	<u><삭 제></u> 제36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u>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u>분실적</u>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u>	<u><삭 제></u>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 ----- ----- ----- ---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u>그 사본을</u>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생략) 2. <u>사업자등록증</u> ③·④ (생략)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해당 서류를 ----- -----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명</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u>그 사본</u>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생략) 2. <u>사업자등록증</u> ④ (생략)	-----. -- <u>사업자등록증명</u>----- ----- <u>해당 서류</u>를----- -----.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명</u> ④ (현행과 같음)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② (생략)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그 사본</u> 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 ----- <u>사업자</u> <u>등록증명</u> -----. ----- <u>사업자등록증</u> <u>명</u> ----- ----- <u>해당 서류</u> 를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생 략)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 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u>설문조사</u> 및 <u>현장조사</u>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 ----- ----- <u>현장조사</u>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인증신청) ① (생략)	제3조(인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사업자등록증 사본</u> 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 <u>사업자등록증명</u> 의 ----- ----- <u>해당 서류</u> 를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 ----- ----- -----.
1. <u>제8조제4항</u> 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u>제7조제4항</u>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1조(재검사) ① (생략)	제81조(재검사)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 <u>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근로자의 날	<삭제>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 (생략)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고 <u>등기부등본을</u> ----- ----- -----.	② 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고 <u>등기사항증명서를</u>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 -----. ③ (생 략)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 ----- ----- ----- ----- ----- -----, ----- ----- ----- ----- ----- ----- <u>해당하</u> <u>다)</u> 를 확인해야 한다.
1. ~ 4. (생략) <u><신 설></u>	1. ~ 4. (현행과 같음) 5. <u>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u>

② ~ ⑥ (생략)	<u>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3조(과태료납부통지서)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u>	<u><삭 제></u>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우수교통물류 운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교통물류운영 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와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면 <u>그 사본</u> 을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 ----- ----- ----- ----- ----- -----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u>사업자등록증명</u> ----- ----- <u>해당 서류</u> 를 -- -----.
1. ~ 5. (생략) ② ~ ⑨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그 사본</u> 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사업자등록증</u> ----- ---. ----- <u>사업자등록증</u> ----- ----- <u>해당 서류</u> 를 --- -----.
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와 <u>사업자등록증</u>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그 사본</u>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u>사업자등록증명</u>----- ----- <u>사업자등록증명</u>----- ----- <u>해당 서류</u>를 -----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①·② (생략)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중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체결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려는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 중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명칭, 협약 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 체결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u>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 법 ·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 여야 한다.</u>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u>문화재청장</u>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 ----- ----- ----- ----- ----- <u>국가유산청장</u> -----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u>문화재청장</u>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 ----- ----- ----- ----- ----- <u>국가유산청장</u> ----- -----. 1. ~ 4. (현행과 같음)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4(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4(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사업자등록증 사본</u>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의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u>	② ----- ----- ----- ----- ----- ----- --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u> -----.
<u>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u>	<u><단서 삭제></u>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